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0. . .<br>(제 회) |      |

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 
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 
규정 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출자    | 국무위원 ○○○<br>(행정안전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0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사업 종료 시까지 대구센터추진단 조직의 운영기간 연장이 불가피

## 3. 주요내용

가.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{부칙 제2조(유효기간)}

- 1)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
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 운영의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

## 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 
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 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영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대통령령 제29378호 국가정보자<br>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의 설치<br>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| 대통령령 제29378호 국가정보자<br>원관리원 대구센터추진단의 설치<br>및 운영에 관한 규정 부칙 |
| 제2조(유효기간) 이 영은 2020년<br>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              | 제2조(유효기간) 이 영은 2021년<br>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             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총괄기획과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연 락 처 | (042) 250 - 5039 |